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1조-제17조)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주석령 [2018] 제3호
- 제 정 일: 1997년 5월 9일
- 개 정 일: 2018년 3월 20일
- 공 포 일: 2018년 3월 20일
- 시 행 일: 2018년 3월 20일

원문	번역문
<p>第一章 总则</p> <p>第一条 为了深化国家监察体制改革，加强对所有行使公权力的公职人员的监督，实现国家监察全面覆盖，深入开展反腐败工作，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根据宪法，制定本法。</p>	<p>제1장 총칙</p> <p>제1조 국가 감찰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모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 감찰의 전면적인 확대를 실현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전개하며,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p>

第二条

坚持中国共产党对国家监察工作的领导，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构建集中统一、权威高效的中国特色国家监察体制。

第三条

各级监察委员会是行使国家监察职能的专责机关，依照本法对所有行使公权力的公职人员（以下称“公职人员”）进行监察，调查职务违法和职务犯罪，开展廉政建设和反腐败工作，维护宪法和法律的尊严。

第四条

监察委员会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监察权，不受行政机关、社会团体和个人的干涉。

제2조

중국 공산당의 국가 감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견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가지 대표" 주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끄는대로 집중된 통일과 권위가 높은 중국특색 국가 감찰체제를 이룩한다.

제3조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 감찰직능을 행사하는 전담기관이며, 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감찰을 진행하고, 직무상 위법과 직무상 범죄를 조사하고, 청렴한 정치 건설과 부패방지 업무를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제4조

감찰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监察机关办理职务违法和职务犯罪案件，应当与审判机关、检察机关、执法部门互相配合，互相制约。

监察机关在工作中需要协助的，有关机关和单位应当根据监察机关的要求依法予以协助。

第五条

国家监察工作严格遵照宪法和法律，以事实为根据，以法律为准绳；在适用法律上一律平等，保障当事人的合法权益；权责对等，严格监督；惩戒与教育相结合，宽严相济。

第六条

国家监察工作坚持标本兼治、综合治理，强化监督问责，严厉惩治腐败；深化改革、健全法治，有效制约和监督权力；加强法治教育和道德教育，弘扬中华优秀

감찰기관은 직무상 위법과 직무상 범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재판기관·검찰기관·집법부서와 서로 협동하고 서로 견제하여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중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과 사업장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감찰업무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행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삼으며, 고르고 평등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권리와 책임은 대등하며, 감독은 엄격하게 한다. 징계와 교육은 서로 결합되어 관대함과 엄격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6조

국가 감찰업무는 표본검치¹를 견지하며 종합적으로 다스리고, 감독 책임을 감화하고,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징벌하도록 한다. 또한 개혁을 심화하고, 제약

¹ 표본검치: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모두 다스리는 것.

传统文化，构建不敢腐、不能腐、不想腐的长效机制。

을 지키고 감독에 노력을 다하며,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널리 드높이며, 부패에 감히 손대지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도록 장기적으로 유효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한다.

第二章 监察机关及其职责

제2장 감찰기관 및 직책

第七条

中华人民共和国国家监察委员会是最高监察机关。

省、自治区、直辖市、自治州、县、自治县、市、市辖区设立监察委员会。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가 최고감찰기관이다.

성·자치구·직할시·자치주·현·자치현·시·시 직할구에 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

第八条

国家监察委员会由全国人民代表大会产生，负责全国监察工作。

国家监察委员会由主任、副主任若干人、委员若干人组成，主任由全国人民代表大会选举，副主任、委员由国家监察委员会主任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제8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유래하며 전국 감찰업무를 책임진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주임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주임과 위원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따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 및 면직한다.

国家监察委员会主任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

国家监察委员会对全国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负责，并接受其监督。

第九条

地方各级监察委员会由本级人民代表大会产生，负责本行政区域内的监察工作。

地方各级监察委员会由主任、副主任若干人、委员若干人组成，主任由本级人民代表大会选举，副主任、委员由监察委员会主任提请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地方各级监察委员会主任每届任期同本级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

地方各级监察委员会对本级人民

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번 임기가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각 임기와 서로 동일하며, 연속으로 임직하는 경우 2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에 대한 감독도 접수한다.

제9조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해당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유래하며, 해당 행정구역 안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주임은 해당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따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 및 면직한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번 임기가 해당급의 인민대표대회의 각 임기와 서로 동일하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해당

<p>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和上一级监察委员会负责，并接受其监督。</p> <p>第十条 国家监察委员会领导地方各级监察委员会的工作，上级监察委员会领导下级监察委员会的工作。</p> <p>第十一条 监察委员会依照本法和有关法律履行监督、调查、处置职责： （一）对公职人员开展廉政教育，对其依法履职、秉公用权、廉洁从政从业以及道德操守情况进行监督检查； （二）对涉嫌贪污贿赂、滥用职权、玩忽职守、权力寻租、利益输送、徇私舞弊以及浪费国家资财等职务违法和职务犯罪进行调查； （三）对违法的公职人员依法作</p>	<p>급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한 급 위의 감찰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에 대한 감독을 접수한다.</p> <p>제10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p> <p>제11조 감찰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조사·직무 및 책임을 이행한다. （1）공직자에게 청렴한 정치를 교육하고, 법에 따른 직책 이행·공평한 권한 사용·청렴한 정치 참여와 업무 종사 정황에 대하여 감독 및 조사 （2）뇌물수수 및 횡령, 직권 남용, 직무 소홀, 권력 오용, 사리사욕 추구, 국가 자원 및 재산 낭비 등 직무를 위반하거나 죄를 저지른다는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하여 조사 진행 （3）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법</p>
--	---

出政务处分决定；对履行职责不力、失职失责的领导人员进行问责；对涉嫌职务犯罪的，将调查结果移送人民检察院依法审查、提起公诉；向监察对象所在单位提出监察建议。

第十二条

各级监察委员会可以向本级中国共产党机关、国家机关、法律法规授权或者委托管理公共事务的组织 和 单位 以及 所 管辖 的 行政 区域、国有企业等派驻或者派出监察机构、监察专员。

监察机构、监察专员对派驻或者派出它的监察委员会负责。

第十三条

派驻或者派出的监察机构、监察专员根据授权，按照管理权限依法对公职人员进行监督，提出监察建议，依法对公职人员进行调

에 따라 정무 처분 결정을 한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실책을 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 직무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사·제소한다. 감찰대상 소재사업장에는 감찰건의를 제출한다.

제12조

각급 감찰위원회는 해당 급의 중국 공산당 기관, 국가 기관, 법률·법규가 권한을 부여하거나 공공사무관리를 위탁받은 조직과 사업장 및 관할 행정구역·국유기업 등에 감찰기구·감찰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낼 수 있다.

감찰기구·감찰전문인력은 파견 또는 출장을 간 곳의 감찰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파견 또는 출장을 가는 감찰기구·감찰전문인력은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를 감독

<p>查、处置。</p> <p>第十四条 国家实行监察官制度，依法确定监察官的等级设置、任免、考评和晋升等制度。</p> <p>第三章 监察范围和管辖</p> <p>第十五条 监察机关对下列公职人员和有关人员进行监察：</p> <p>(一) 中国共产党机关、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机关、人民政府、监察委员会、人民法院、人民检察院、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各级委员会机关、民主党派机关和工商业联合会机关的公务员，以及参照《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管理的人员；</p> <p>(二) 法律、法规授权或者受国家机关依法委托管理公共事务的组织中从事公务的人</p>	<p>하고 감찰 건의를 제출하며 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조사나 처리를 진행한다.</p> <p>제14조 국가는 감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감찰관의 등급 설치, 임명과 면직, 심사 평정, 승진 등 제도를 확정한다.</p> <p>제3장 감찰범위와 관할</p> <p>제15조 감찰기관은 아래에 열거하는 공직자와 관련 인력에 대하여 감찰한다.</p> <p>(1) 중국 공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기관,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위원회 기관, 민주 당파기관과 상공업연합회 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비추어 관리를 맡은 자</p> <p>(2) 법률·법규에서 권한을 위임하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법에 따라 위탁을 받아</p>
---	--

<p>員;</p> <p>(三) 国有企业管理人員;</p> <p>(四) 公办的教育、科研、文化、医疗卫生、体育等单位中从事管理的人員;</p> <p>(五) 基层群众性自治组织中从事管理的人員;</p> <p>(六) 其他依法履行公职的人員。</p> <p>第十六条</p> <p>各级监察机关按照管理权限管辖本辖区内本法第十五条规定的人員所涉监察事項。</p> <p>上级监察机关可以办理下一级监察机关管辖范围内的监察事項，必要时也可以办理所辖各级监察机关管辖范围内的监察事項。</p> <p>监察机关之间对监察事項的管辖有争议的，由其共同的上级监察机关确定。</p> <p>第十七条</p>	<p>공공 사무를 관리하는 조직 가운데 공무에 종사하는 자</p> <p>(3) 國有기업 관리자</p> <p>(4) 公衆 교육·연구·문화·의료 및 위생·체육 등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관리자</p> <p>(5) 기층 민중 자치조직에서 종사하는 관리자</p> <p>(6) 그 밖에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자</p> <p>제16조</p> <p>각급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에서 이 법 제 15조가 규정하는 자에 관한 감찰사항을 관할한다.</p> <p>상급 감찰기관은 한 급 아래의 감찰기관의 관할범위 안에 있는 감찰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급 감찰기관의 관할범위 안에 있는 감찰사항도 처리할 수 있다.</p> <p>감찰기관 간에 감찰사항의 관할 여부에 대하여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의 상급 감찰기관이 확정한다.</p> <p>제17조</p>
---	---

<p>上级监察机关可以将其所管辖的监察事项指定下级监察机关管辖，也可以将下级监察机关有管辖权的监察事项指定给其他监察机关管辖。</p> <p>监察机关认为所管辖的监察事项重大、复杂，需要由上级监察机关管辖的，可以报请上级监察机关管辖。</p>	<p>상급 감찰기관은 자신이 관할하는 감찰 사항을 한급 아래의 감찰기관이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급 아래의 감찰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관찰사항을 그 밖의 감찰기관이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p> <p>감찰기관이 관할하는 감찰사항이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인지하여서, 상급 감찰기관의 관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감찰기관이 관할하도록 보고할 수 있다.</p>
---	---